



즉시 배포용: 2017 년 12 월 2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민의 재산세 공제 제도를 위해 긴급 행정 조치 시행**

조기 세금 징수를 위해 지방 정부가 수세 증당 채권(Warrants)을 발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납세자의 재산세 분납을 허용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주지사, 조기 세금 징수를 위해 지방 정부와 협력하도록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지시

공화당 조세 법안(GOP Tax Bill)으로 인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상한 10,000 달러의 파괴적인 영향을 뉴욕 주민들이 피하도록 돕는 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공화당 조세 법안(GOP tax bill)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뉴욕의 부동산 소유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 지방 정부가 2018 년 재산세 납부액을 징수하기 위해 즉시 수세 증당 채권(tax warrant)을 발급하도록 승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주가 연말 및 현행 조세 구조 아래서 적어도 법안의 일부를 지불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지사는 조기 세금 징수를 위해 지방 정부와 협력하도록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지시했습니다.

오늘 법안에 서명한 연방 조세 계획(federal tax plan)은 주세 및 지방세의 공제 상한을 10,000 달러로 제한합니다. 이 계획은 재산세를 효과적으로 인상하고 뉴욕 및 미국 모든 주의 주택 가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이 주와 이 나라에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저는 부동산 소유주가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허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뉴욕은 우리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격으로 우리가 달성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공화당 조세 법안(GOP tax bill)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연방 세금에서 납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두 가지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 172 호\(Executive Order #172\)](#)에 서명했습니다.

### 즉각적인 세금 징수를 지방 공무원에게 승인

주지사는 지방 정부가 올해 말까지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세 담당 채권의 즉각적인 발급을 승인했습니다. 공무원은 수세 담당 채권을 발급하여 현지 세금 징수관에게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늦어도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뉴욕 주민들은 2017년에 2018년의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연방 차원에서 납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납세자의 조기 분납 허용

이 행정명령(EO)은 또한 연말까지 납세자가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현지 법률을 일시 중지시킬 것입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고지서의 정확한 금액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현행 연방 세법에 따라 세금 납부액의 일부를 조기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세금 징수관은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업무 종료일까지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수세 담당 채권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분납을 수령하도록 승인 및 지시받았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힌 우편에 의한 납부는 승인됩니다.

뉴욕주의 **Robert Mujica** 예산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수세 담당 채권을 발급할 수 있는 지방 정부 및 교육청의 경우,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납세자들에게는 그것이 실현 가능하거나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 뉴욕주 카운티 협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의

**Stephen J. Acquari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Andrew M. Cuomo 주지사님이 2018년 재산세를 조기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을 뉴욕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사용하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온 관계로, 이

조치는 지방 당국이 2017 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뉴욕주 시장 협의회(New York State Conference of Mayors)의 Peter A. Bayne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의 상한이 뉴욕에게 고통스런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와 빌리지의 리더들은 2018 년 재산세의 완납 또는 분납이 2017 년에 가능하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Cuomo 주지사님의 결단력 있는 조치로 우리 회원들은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이 연방 조세 개혁(federal tax reform)으로 인한 부정적인 재정적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